

홋카이도 긴급사태조치 (개정)

2021년 9월 10일

실시내용

국가의 긴급사태선언 연장을 감안하여,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억제를 목표로 사람간 접촉기회를 철저히 줄이기 위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9**항에 의거하여 도민 등에 대한 요청을 하는 동시에 필요한 협력에 관한 활동을 실시한다.

대상구역

특정조치구역

삿포로시, 에베쓰시, 치토세시, 에니와시, 기타히로시마시,
이시카리시, 도베쓰시, 신시노쓰무라, 오타루시, 아사히카와시

일반조치구역

특정조치구역 이외의 시정촌

기 간

2021년 9월 13일 (월) ~ 9월 30일 (목)

특정조치구역

요청내용

(일상생활에서)

◆ 감염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델타변이주로의 전국적인 전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3밀(밀폐·밀집·밀접)」,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5가지 경우※)」 등의 방이나 「사람간의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손 소독」, 「환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음주를 수반하는 친목회 등, 대규모 인원이나 장시간에 걸친 음식 섭취, 마스크 없이의 대화,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 생활, 거쳐 이동

(특히, 외출할 때는)

◆ 낮시간을 포함하여 불필요한※외출이나 이동을 삼간다. 특히 20시 이후의 외출을 삼간다. 더하여, 특히 주말 외출을 삼간다. (특조법제45조제1항)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간 통원, 식료품·의료품·생활필수품의 구입, 필요한 직장출근, 옥외에서의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이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주십시오. 아울러,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이더라도 일상적으로 행동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나 동료와는 반드시 소수 인원으로 행동하며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 행동해 주십시오.

◆ 대규모 상업시설 등 혼잡한 장소에 대한 외출을 반감시킨다. (특조법제45조제1항)

※ 예를 들면, 쇼핑 횟수를 절반으로 하는 등의 대응을 해 주십시오.

◆ 중증화 위험이 높은 분※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감염방지대책을 한층 더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고령자, 기초질환이 있으신 분, 일부의 임신후기이신 분

◆ 불필요한 도도부현간의 이동을 최대한 삼간다. (특조법제45조제1항)

※ 홋카이도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이 아무래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는 것 이외에도 체온 체크나 필요에 따라서 PCR 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동차에서는 <3밀> 회피를 포함한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 특히 다수인원(5명 이상)의 회식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홋카이도 방문 (특정조치구역으로의 방문) 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분께 드리는 협력 의뢰】

협력의뢰
내용

◆ 불필요한 귀성이나 여행 등, 홋카이도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삼가도록 요구되고 있다. 홋카이도로의 이동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출발 전에 PCR 검사를 받는 등, 몸상태 관리를 철저히 한다.

(협력의뢰) ※ 국가차원에서는 9월 30일까지 하네다, 나리타, 주부, 이타미, 간사이, 후쿠오카의 각 공항에서 홋카이도로 향하는 이용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서 무료 PCR 검사·항원 정량 검사를 실시.

요청내용

(특히, 음식을 섭취할 때는)

- ◆ 감염방지 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음식점 등이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는 음식점 등의 이용을 최대한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음식점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감염방지대책에 협력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노상·공원 등에서의 집단음주 등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간다.
(특조법제45조제1항)
- ◆ 가능한 한 동거하고 있지 않는 사람과의 음식섭취를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음식점 등에 대한 요청·협력의뢰】

대상시설

- 【음식점】 음식점(주점 포함), 카페 등 (배달·테이크아웃 제외)
- 【유흥시설】 카바레, 노래방 등에서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점포 및 음식점영업허가를 받고 있지 않는 노래방
- 【결혼식장】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결혼식장

【주류 또는 노래방 설비를 제공(음식업 허가를 받고 있지 않는 노래방 및 이용자의 주류 점내 반입을 인정하고 있는 음식점 포함) 하는 음식점 (주류 및 노래방 설비의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를 제외)】

◆ 휴업한다. (특조법제45조제2항)

【상기 이외의 음식점 (배달, 테이크아웃 제외)】

◆ 영업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특조법제45조제2항)

요청·협력의뢰 내용

◆ 다음의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한다. (특조법제45조제2항)

- 종원원들의 검사 장려 ·입장자의 정리·유도 ·발열, 기타 증상이 있는 사람의 입장금지
- 손 소독 설비의 설치 ·사업장 소독 ·마스크 착용 및 기타 감염 방지에 관한 조치의 공지
-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방지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자의 입장금지(이미 입장한 사람의 퇴장 포함)
- 시설 환기 ·아크릴판 등의 설치 또는 이용자의 적절한 거리 확보 등 비말감염방지에 효과가 있는 조치 강구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접촉 확인 앱(COCOA) 및 핫카이도 코로나 통지 시스템의 활용 호소
- 동일그룹의 입점은 원칙적으로 4인 이내
- 체재시간의 제한(2시간 정도를 기준) 등으로 동시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한다.
- 가게 안에서는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침묵식사~식사는 조용히, 대화는 마스크~의 실천) 등

◆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감염방지대책 체크항목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점과 동일한 요청에 따를 것. 또한 가능한 한 단시간(1.5시간 이내)으로 소규모 인원(50명 또는 50% 중 작은 쪽)으로 개최할 것. (협력의뢰)

※ 요청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 지급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금】 9월 13일 ~ 9월 30일까지 전 기간(18일간) 협력 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1개 점포당 72만엔 ~ 180만엔, 대기업: 1개 점포당 최대 360만엔

【이벤트의 개최에 대한 요청·협력의뢰】

인원수
상한 및
수용률

특조법제24조제9항

- 인원수 상한 : **5,000명** 동시에 수용률 **50%**
- ※ 감염예방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는 무관객·온라인송신으로의 개최와 더불어,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요청·
협력의뢰
내용

- ◆ 영업시간은 **21시까지** (무관객으로 개최되는 행사 제외). (특조법제24조제9항)
- ◆ 주류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점내반입 포함) 을 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 ◆ 이벤트 개최에 대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행사 전후의 **3밀** 및 음식섭취를 방지하는 조치 철저. (특조법제24조제9항)
- ◆ 국가의 접촉확인 앱 (**COCOA**) 도입, 명부작성 등 추적대책 철저. (특조법제24조제9항)
- ◆ 참가자 등의 행사 후 곤장 귀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공지·호소 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전국적 이동을 수반하는 행사 혹은 참가자가 1,000명을 넘는 행사의 실시에 대해서는 개최요건 등에 대하여 핫카이도와 사전상담을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전국적인 이동이 전망되는 것은 개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다. (협력의뢰)

※ 9월 13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기 기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티켓의 신규판매 중지할 것.

※ 10월 1일 이후에 개최예정인 이벤트에 대해서도 본대책기간중에는 상기 기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티켓의 신규판매 중지할 것.

【사업자에게 드리는 요청 · 협력의뢰】

요청·
협력의뢰
내용

- ◆ 직장 출근 등에 대해, 사람의 이동을 억제하는 관점에서 재택근무 (텔레워크) 활용이나 휴가취득 촉진 등을 통해 출근자수의 **70%** 삭감을 목표로 한다 (협력의뢰)
- ◆ 사업의 지속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시** 이후의 근무를 억제한다. (협력의뢰)
- ◆ 직장 출근하는 경우에도, 시차 출근, 자전거 통근 등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한다. (협력 의뢰)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휴식 장소나 식사 장소 등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하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주요 관광시설 등의 라이트업이나 변화가의 옥외광고 등에 대해서 **20시** 이후, 야간 소등한다. (협력 의뢰)
- ◆ 시영교통 (지하철 · 노면전차) 에 대한 막차 단축운행이나 주요 터미널 (오도리역, 삿포로역) 에서의 체온검사를 실시한다 (협력의뢰)
- ◆ 다른 교통 사업자에 대해서도 막차의 단축운행 등의 대응을 검토한다 (협력의뢰)

요청내용

- ◆ 고등학교에서는 시차 통학, 하루 당 수업시간 삭감 및 **16시**까지 완전 하교를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위생관리매뉴얼 (**R3.4.28**개정) 에 따라 학교교육활동에서는 감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학습활동을 중지한다. 또한 학생기숙사에서는 공용공간 활용을 통해 **3**밀상태가 되지 않도록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아동·학생과 동거 가족의 감염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학급·학년·전교에서의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 경우, 온라인 학습 등에 의해 학습을 보장하는 동시에 집에 있는 것이 곤란한 아동의 거처를 확보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학교행사 (운동회, 체육제, 수학여행, 숙박연수 등) 를 중지, 연기, 축소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동아리 활동은, 고등학교체육연맹 등이 주최하는 전도, 전국에 직결되는 대회 등에 출전하는 동아리활동 한하며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 활동을 엄선 (시간, 인원수, 활동내용) 함과 함께, 활동장소는 자교내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이 이외에는 중지한다. 더불어 건강상태의 다중체크를 일상적으로 함과 동시에 감염방지대책의 전교 지도체제를 확립한다. 아울러, 대회 참가는 교장 판단 하에 실시하고, 주최자 등의 감염방지대책을 엄수한다.(특조법 제24조제9항)
- ◆ 대학, 전문학교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며 곤란한 경우에는 학급 분할수업이나 큰 강의실의 활용 등의 실시로 **3**밀을 방지한다.(특조법제24조제9항)

【공립시설】

공립시설

- ◆ 원칙상 휴관하도록 한다.

【음식점 등 이외의 시설에 대한 요청·협력의뢰 ①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시설】

특정조치구역

요청·협력의뢰 내용

시설종류	내역	요청·협력의뢰내용	
		1,000m ² 초과	1,000m ² 이하
상업시설	대규모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의 물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대규모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 가운데 생활필수품을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협력의뢰) ※ 대규모소매점, 쇼핑센터, 백화점 등 가운데 생활필수품을 제외한다
유기시설	파칭코점, 게임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상업시설에서 인원수 관리, 인원수 제한, 유도 등의 입장자 정리 등을 실시한다. (특조법제45조제2항) ◆ 감염위험이 높은 곳으로 알려진 백화점의 지하식품매장 등에 대해서 인원수 관리, 인원수 제한, 유도 등의 입장자 정리 등을 실시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자의 정리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정리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공지한다. (협력의뢰)
유흥시설	성풍속점, 경마투표권발매소, 장외경마(경차·경정)권 발매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일요일에 세일이나 집객이벤트를 자숙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정리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공지한다. (협력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를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매장 내 반입 포함) 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서비스업	대중목욕탕, 피부관리실 등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점포 (생활필수서비스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를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매장 내 반입 포함) 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특조법에 의거해 1,000m²를 초과하는 시설에서 영업시간 단축에 협조한 사업자에게는 지원금 지급 (다른 지원 메뉴를 이용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대규모 시설(1,000m²초과)에 대한 지원금】

대규모 시설 1일당 20만엔 × 면적 / 1,000m² × 시간단축율(※) × 시간단축일수

임차영업자 1일당 2만엔 × 면적 / 100m² × 시간단축율(※) × 시간단축일수

※ 영업시간에 대한 단축시간의 비율

요청·협력의뢰 내용

시설 종류	내역	요청·협력의뢰내용	
극장 등	극장, 관람장, 영화관, 공연장, 플라네타륨 천문관 등	1,000㎡ 초과	1,000㎡이하
		◆ 영업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 (이벤트 개최의 경우는 21시까지) 로 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영업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 (이벤트 개최의 경우는 21시까지) 로 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최대인원 5,000명, 수용률 50%이내로 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최대인원 5,000명, 수용률 50%이내로 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인원수 관리, 인원수 제한, 유도 등의 입장자 관리 등을 행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입장자의 정리 유도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정리 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주지시킨다. (협력 의뢰)	◆ 정리 유도 등의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주지시킨다. (협력 의뢰)
집회· 전시시설	집회장, 공회당, 전시장, 대여 회의실, 문화회관 등	◆ 주류를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매장 내 반입 포함) 하지 않는다. (협력 의뢰)	◆ 주류를 제공 (이용자에 의한 주류의 매장 내 반입 포함) 하지 않는다. (협력 의뢰)
호텔·여관	호텔, 여관(집회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에 한함)	◆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지 않는다. (협력의뢰)
운동시설, 유기시설	야구장, 육상경기장, 스포츠클럽, 테마파크, 유원지 등		
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등		

※특조법에 의거해 1,000㎡를 초과하는 시설에서 영업시간 단축에 협조한 사업자에게는 지원금 지급 (다른 지원 메뉴를 이용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

【대규모 시설(1,000㎡초과)에 대한 지원금】
 대규모 시설 1일당 20만엔 × 면적 / 1,000㎡ × 시간단축율(※) × 시간단축일수
 임차영업자 1일당 2만엔 × 면적 / 100㎡ × 시간단축율(※) × 시간단축일수
 ※ 영업시간에 대한 단축시간의 비율

【음식점 등 이외의 시설에 대한 요청·협력 의뢰③】

대상시설	요청·협력 의뢰
<p>보육원, 요양노인보건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위험이 높은 활동 등 제한 (협력 의뢰)
<p>장례식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제공(이용자의 주류 반입 포함)을 금함 (협력 의뢰)
<p>도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자의 정리/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p>PC방, 만화방, 목욕탕, 이발소, 전당포, 의류대여점, 세탁소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자의 정리/유도 등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점포에서의 주류제공(이용자의 주류 반입 포함) 및 노래방 설비 사용 자제 (협력 의뢰)
<p>운전학원, 학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활용 등 (협력 의뢰)

일반조치구역

【일반조치구역의 주민 및 체재자 분들께 드리는 요청①】

요청내용

(일상생활에서)

- ◆ 감염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델타변이주로의 전국적인 전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3밀(밀폐·밀집·밀접)」,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5가지 경우※)」 등의 방지나 「사람간의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손 소독」, 「환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음주를 수반하는 친목회 등, 대규모 인원이나 장시간에 걸친 음식 섭취, 마스크 없이의 대화,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 생활, 거처 이동

(특히, 외출할 때는)

- ◆ 낮 뿐 아니라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을 삼간다. 특히 20시 이후의 외출과 주말 외출은 자제한다.

※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통원, 식료품·의료품·생활필수품의 구입, 직장 출근, 야외 운동이나 산책 등, 생활이나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삼가주십시오. 아울러, 필요한 외출이나 이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소수 인원으로 행동하며 혼잡한 장소나 시간을 피해 행동해 주십시오.

- ◆ 중증화 위험군에 속하는 분※과 만날 때는 기본적인 감염방지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고령자, 기초질환자, 후기에 접어든 일부 임산부

- ◆ 특정 조치구역과의 불필요한 왕래를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불필요한 도도부현간의 이동을 최대한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불가피하게 홋카이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물론, 체온 체크나 필요에 따라서 PCR 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몸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동한 곳에서는 <3밀>을 피하고, 기본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지키며, 특히 다수인원(5명 이상)의 회식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홋카이도 방문 (일반조치구역으로의 방문) 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분께 드리는 협력 의뢰】

협력의뢰
내용

- ◆ 불필요한 귀성이나 여행 등, 홋카이도로의 방문은 최대한 삼간다. 불가피하게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지키고 출발 전에 PCR 검사를 받는 등 몸 관리에 힘쓴다. ※국가에서는 9월 30일까지 하네다, 나리타, 주부, 이타미, 간사이, 후쿠오카의 각 공항에서 홋카이도로 향하는 이용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서 무료 PCR 검사·항원 정량 검사를 실시.

요청내용

(특히, 음식을 섭취할 때는)

- ◆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하지 않은 음식점 등의 이용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음식점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음식점 등이 실시하고 있는 감염방지대책에 협력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노상·공원 등에서의 집단음주 등 감염위험이 높은 행동을 삼간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식사는 4명 이내 등 소수인원으로, 단시간에, 과음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대화시에는 마스크 착용 (「침묵식사 ~ 식사는 조용히, 대화는 마스크 착용 후~」의 실시) (특조법제24조제9항)

【음식점 등에 요청】

대상시설

- [음식점] 음식점(선술집 포함), 찻집 등(택배·테이크아웃 서비스 제외)
- [유흥시설] 카바레, 노래방 등에서 식품위생법 음식점 운영허가를 받은 점포
- [결혼식장]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결혼식장

요청내용

- ◆영업시간은 **5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주류 제공(이용자에 의한 점포내 주류 반입 포함)은 일정의 요건※을 만족한 점포에 한해 **19시 30분까지**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포는 주류 제공을 할 수 없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입장 가능 단체는 원칙적으로 4명이내로 제한, 아크릴판 등 설치(좌석 간격 확보), 손소독 철저히, 식사 이외에 마스크 착용 권장, 환기 철저히, 코로나 접촉확인 어플(COCOA) 및 핫카이도코로나알림시스템 활용 홍보, 체류시간 제한(2시간 정도 기준) 등을 준수해 같은 시간대에 다수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한다. 가게 안에서는 큰 소리로 대화하지 않도록 주지시킨다. (침묵식사~식사는 조용히, 회화는 마스크 착용 후~ 실천). 업무개시 전에 체온을 측정하는 등 종업원의 몸 상태도 체크한다.
-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감염방지대책 체크항목 등 다음의 감염방지대책을 실시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종업원에게 검사 권장 •입장자 관리·유도 •발열 및 그 이외의 증상이 있는 사람의 입장 금지
 - 손소독과 관련한 설비 설치 •사업장 소독 •마스크착용 및 감염방지에 관한 조치 주지
 -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 착용 등 감염방지조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입장 금지 (이미 입장한 사람의 퇴점도 포함)
 - 시설 환기 •아크릴판 등 설치, 이용자간 적절한 거리 확보 등 비말감염방지 효과가 있는 조치 시행 등
- ◆음식이 메인인 업소 등에서는 노래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 요청에 협력해 주신 사업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금】 9월13일~9월30일까지 전기간(18일간)협력의 경우
 중소기업·개인사업자:1개 점포당 45만엔~135만엔, 대기업:1개 점포당 최대 360만엔

【이벤트 개최에 대한 요청·협력 의뢰】

인원상한
및
수용률
(※1)

○인원수 상한

5,000명

○수용률

[**100%** 이내] 큰 소리 환성·응원 등이 없다는 것이 전제(※2)

[**50%** 이내] 큰 소리 환성·응원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3)

※감염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객·온라인 개최 혹은 연기 또는 중지를 검토한다.

특조법 제24조 제9항

※1 인원수 상한과 수용률 중 낮은 쪽을 한정(양쪽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2 클래식 음악 콘서트, 연극, 무용, 전통극, 예능·연예, 공연·식전, 전시회 등, 음식은 물론 소리도 내지 않을 것(이벤트 중 식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필요한 감염방지대책이 담보되어 이벤트 중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에 한해 「큰 소리로 환성·응원 등이 없다는 것이 전제」로 간주할 수 있다.)

※3 록, 팝콘서트, 스포츠이벤트, 공연경기, 공연, 라이브하우스·나이트클럽에서의 이벤트 등(다른 단체 사이에는 좌석을 하나 비우고, 같은 단체 (5명 이내로 제한) 내에서는 좌석간격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즉 수용률은 **50%**를 넘는 경우가 있다.)

요청·
협력
의뢰내용

- ◆ 영업시간은 **21시까지**(무관객 개최 대회 제외)(특조법 제24조 제9항)
- ◆ 주류제공(이용자에 의한 주류 반입 포함)은 **19시30분까지**(협력 의뢰)
- ◆ 행사 개최에 있어서는 업종별 가이드라인 준수(특조법 제24조 제9항)
- ◆ 대회 전후 **3밀** 및 음식을 피할 수 있는 대책 마련(특조법 제24조 제9항)
- ◆ 접촉확인어플(COCCA) 도입, 명부 작성 등 추적 대책 마련(특조법 제24조 제9항)
- ◆ 전국적 이동이 수반된 이벤트 또는 참가자가 **1,000명**이 넘는 이벤트는 개최요건 등과 관련해 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특조법 제24조 제9항)
- ◆ 전국적 이동이 예정된 경우 개최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협력 의뢰)
- ◆ 이벤트 관련 시설 및 이벤트를 개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시 이벤트 개최 여부에 관계없이 인원상한, 수용률 등의 내용을 준수(협력 의뢰)

※ 9월 13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기 기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티켓의 신규판매 중지할 것.

※ 10월 1일 이후에 개최예정인 이벤트에 대해서도 본대책기간중에는 상기 기재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티켓의 신규판매 중지할 것.

【사업자에게 드리는 요청 · 협력의뢰】

요청·
협력의뢰
내용

- ◆ 직장 출근 등에 대해, 사람의 이동을 억제하는 관점에서 재택근무 (텔레워크) 활용이나 휴가취득 촉진 등을 통해 출근자수의 **70%** 삭감을 목표로 한다. (협력의뢰)
- ◆ 사업의 지속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시** 이후의 근무를 억제한다. (협력의뢰)
- ◆ 직장 출근하는 경우에도, 시차 출근, 자전거 통근 등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한다. (협력 의뢰)
- ◆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휴식 장소나 식사 장소 등 직장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를 재점검하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주요 관광시설 등의 라이트업이나 번화가의 옥외광고 등에 대해서 **20시** 이후, 야간 소등한다. (협력 의뢰)
- ◆ 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한다. (협력의뢰)
- ◆ **1,000m²**를 초과하는 집객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단축, 주류 제공 자숙 및 노래방 설비의 사용 자숙에 대해서 검토한다. (협조의뢰)
- ◆ 대규모 상업시설 및 감염 리스크가 높은 곳으로 여겨지는 백화점 지하식품 매장 등에 대해서 인원수 관리, 인원수 제한, 유도 등 입장자에 대한 정리 등을 실시한다. (협력의뢰)

요청내용

- ◆ 위생관리매뉴얼 (R3.4.28개정) 에 따라 학교교육활동에서는 감염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학습활동을 실행하지 않으며 학생기숙사에서는 공용공간 활용을 통해 3밀상태가 되지 않도록 감염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아동·학생과 동거 가족의 감염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학급·학년·전교에서의 신속하고 폭넓은 휴교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이 경우, 온라인 학습 등에 의해 학습을 보장하는 동시에 집에 있는 것이 곤란한 아동의 거처를 확보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학교행사 (운동회, 체육제, 수학여행, 숙박연수 등) 를 중지, 연기, 축소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 ◆ 동아리 활동은, 고등학교체육연맹 등이 주최하는 전도, 전국에 직결되는 대회 등에 출전하는 동아리활동 한하며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하고 활동을 엄선 (시간, 인원수, 활동내용) 함과 함께, 활동장소는 자교내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이 이외에는 중지한다. 더불어 건강상태의 다중체크를 일상적으로 함과 동시에 감염방지대책의 전교 지도체제를 확립한다. 아울러, 대회 참가는 교장 판단 하에 실시하고, 주최자 등의 감염방지대책을 엄수한다. (특조법 제24조제9항)
- ◆ 대학, 전문학교 등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활용이나 학급 분할수업 등의 실시로 3밀을 방지한다. (특조법제24조제9항)

【공립시설】

공립시설

- ◆ 도립시설은 원칙상 휴관하도록 한다.
- ◆ 시정촌립 시설은 감염상황 및 시설의 목적을 감안하여, 순차적 휴관 등을 검토한다.